

전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가합4169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고1. N

2. O

변론 종결2016. 6. 29.

판결 선고2016. 10.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735,400원, 원고 B에게 43,822,000원, 원고 C에게

45,470,000원, 원고 D에게 43,998,000원, 원고 E에게 68,280,000원, 원고 F에게 145,900,000원, 원고 G에게 104,266,000원, 원고 H에게 52,872,000원, 원고 I에게 61,130,000원, 원고 J에게 45,990,000원, 원고 K에게 413,311,321원, 원고 L에게 9,819,000원, 원고 M에게 171,539,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으로, 원고 A에게 37,735,400원, 원고 B에게 43,822,000원, 원고 C에게 45,470,000원, 원고 D에게 43,998,000원, 원고 E에게 68,280,000원, 원고 F에게 145,900,000원, 원고 G에게 104,266,000원, 원고 H에게 52,872,000원, 원고 I에게 61,130,000원, 원고 J에게 45,990,000원, 원고 K에게 413,311,321원, 원고 L에게 9,819,000원, 원고 M에게 171,539,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M의 남편인 P과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전북 무주군·진안군 등지에서 육우를 사육하던 농민들이고, 피고 N은 수입소 업무대행자 Q의 소개로 피고 N 명의로 생우(호주산 거세우)를 수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무주군·진안군 등의 육우 사육농가들에 생우를 입식하여 비육시킨 다음 이를 출하 받아 가는 자이다.

(2)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 N에게 생우를 납품한 P은 2012. 6. 22. 사망하였고, 망 P의 상속인인 원고 M은 망 P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원고 M이 망 P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원고 M도 나머지 원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M을 나머지 원고들과 구분하지 않고 나머지 원고들에 포함시켜서 판단하기로 하고 '원고들'로 표시한다).

나. 생우출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2. 7.경 피고 N과 사이에 수입소 사육농가인 원고들이 피고 N으로부터 생우를 입식받아, 피고 N이 정한 사육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생우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비육시킨 후, 다시 위 비육우를 피고 N에게 출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하계약(이하 '이 사건 출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출하계약의 체결여부를 다투나, 이에 대하여는 2의 나.항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N은 생우 수입절차를 진행하여 2003. 1.경 검역절차 등을 거쳐 생우 851마리를 국내로 들어왔고, 위 생우는 2003. 4.경 원고들을 비롯한 무주군·진안군 농가에 입식되었다.

(3) 원고들은 2004. 4.경부터 2004. 7.경까지 위와 같이 생우를 사육하여 피고 N에게 공급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출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

다. 지불각서 작성 및 연대보증

(1) 피고 N은 2005. 11. 2. 원고들을 포함한 무주군·진안군 입식 농가들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총합계 1,407,913,000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O(피고 N의 배우자이다)은 위 지불약정을 보증하였다.

(2) 피고 N은 2006. 10. 1. 원고를 비롯한 입식 농가들에게 '1,407,913,000원을 200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입식이 늦어짐에 따라 2차 입식시인 2007. 8. 30.까지 1차 지급하고 잔금은 전액 3차 입식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으며, 피고 O은 위 지불약정을 보증하였다.

라. 관련 사건

원고들과 같이 N에게 수입육우를 출하한 무주군 농가들 중 R은 2010. 6. 24. 피고 N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480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0. 7.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N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O은 피고 N의 위 매매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출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별지 기재와 같이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약정금채권을 선택적으로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피고들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인 약정금청구는 살피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출하계약 상대방이 S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출하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N이 아닌, S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가 육우 출하 두수를 확인하고, 출하대금 잔액 1,041,403,280원이 농가들에게 지급할 금액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S가 이 사건 출하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N이 원고들과 이 사건 출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7호증),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무주군·진안군 농가들에게 생우출하대금으로 정산지급할 금액이 1,407,913,000원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2차례(2005. 11. 2.자 및 2006. 10. 1.자 각 지불각서)나 작성한 사실[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지불각서는 원고들이 아닌, T을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허위내용의 문서라고 주장하나,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 작성명의인의 대리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반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776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출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N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가 이 사건 출하계약의 당사자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가)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육우를 판매한 것은 2004. 4.경부터 2004. 7.까지이고, 지불각서 상 변제기는 2006. 9. 30. 또는 2007. 8. 30.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11.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시효소멸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설령 상사시효 5년의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상시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그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으로서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지불각서를 2006. 10. 1.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 4. 29.경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5. 16. 가압류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차 지불각서의 작성은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위 2차 지불각서의 변제기인 2007. 8. 30.(위 2차 지불각서의 변제기 중 잔금은 3차 입식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3차 입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2차 지불각서와 같이 2007. 8. 30.까지 약정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시점을 변제기로 보기로 한다)로부터 3년 내인 2008. 5. 16.경 원고들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되었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은 가압류라는 시효중단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멸시효 중단이 효력이 없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기한 가압류등기가 2014. 5. 21. 접수 제6845호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만약 위 말소등기가 경로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들이 가압류인가결정취소신청을 제기하여 위 가압류를 말소시켰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서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를 취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가압류의 시효중단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들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소신청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N이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매대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갑 제10호증의 경우 원고들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청구하는 매매대금의 금액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작성해준 지불각서 금액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으로서, 피고들로서는 위 지불각서상의 금액 내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갑 제10호증 상의 미지급 매매대금의 기재내용을 원고들의 청구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N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으로, 피고 O은 피고 N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735,400원, 원고 B에게 43,822,000원, 원고 C에게 45,470,000원, 원고 D에게 43,998,000원, 원고 E에게 68,280,000원, 원고 F에게 145,900,000원, 원고 G에게 104,266,000원, 원고 H에게 52,872,000원, 원고 I에게 61,130,000원, 원고 J에게 45,990,000원, 원고 K에게 413,311,321원, 원고 L에게 9,819,000원, 원고 M에게 171,539,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지불각서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7. 8. 31.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1차 지불각서상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지불각서 작성으로 그 변제기를 위 2차 지불각서의 지급기일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2차 지불각서상 최종 변제기는 3차 입식시이나, 이 사건 기록상 3차 입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2차 지불각서상의 2차 지급기일인 2007. 8. 30.까지 약정대로 2차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2007. 8.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피고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7. 8. 31.로 정하였다. 따라서 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시행 2015. 10.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봉규

판사김소연

판사유동균

별지